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. 3. 28 선고 2023가단137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

변 론 종 결 2024. 3. 14.

판 결 선 고 2024. 3. 2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. 2. 5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4. 20. 접수 제11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원고가 D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, 소외 C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/9 지분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바, 이는 채권자인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,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,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하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2. 판 단

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,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. 10. 13.

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, 이 사건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(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단50269)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는 그 시점에 적어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,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.

3. 결 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숙미

별지